

- 서울특별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331
------------	------

2018년 2월 27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2월 1일, 김상훈 의원 외 9명

나. 회부일자 : 2018년 2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통위원회(2018년 2월 27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상훈 의원)

가. 제안이유

- 동 조례는 2007년 일부 개정된 이후 한 번도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문상 연계된 법령과 법률 용어가 현실에 맞지 않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복 착용 및 기간 등을 개선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주차단속직류 지방조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 제복의 착용기간 중 하계를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춘계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8. 2. 9 ~ 20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수정 가결

- 개정조례안은 2007년 일부 개정된 이후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조례”의 용어순화 및 조항오류 등을 개정함으로써 현실여건을 반영한 제복의 착용 및 착용기간 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13.12.30.)에 따라 “주차단속직류 지방조무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극 수용하며,

- 이번 개정안과 연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아래 내용 수정하여 가결하여 주시기 바람

- ▶ 제3조(제복의 종류) 제1항 제1호 다, 라, 마와 제2호 삭제

- ▶ 제3조제2항의 제복 만드는 방법(별표1)과 제6조 지급기준(별표2)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의 춘계 및 하계 제복 착용기간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개선코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시장이 단속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명된 단속공무원은 업무 수행 중 반드시 제복을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복 관련 필요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 참고 : 주·정차 단속공무원 제복 착용 및 관련 사항에 대한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① 도지사 및 시장등은 주차나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단속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주차 및 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 및 제복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한편, 2013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1)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공무원 직군·직렬 등 임용체계가 개편되면서 “주차단속직류 지방조무원”이 폐지되고 “임기제공무원”이 신설되었는바,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이를 반영하여 “주차단속직류 지방조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임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2013.11.20.), 시행(2013.12.12.)

다만, 동 조례를 근거로 행정을 집행하는 서울시는 2013년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방치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에 소홀했던 바, 향후 이와 같은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체 규정에 대한 일제 정비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임

※ 참고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법상 정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은 온난화에 따라 지난 수년간 더위가 이른 시기에 시작됨에 따라 제복의 착용기간을 춘계의 경우 기존 ‘4월 1일~6월 9일’에서 ‘4월 1일~5월 31일’로 9일 단축하고, 하계의 경우 기존 ‘6월 10일~8월 31일’에서 ‘6월 1일~8월 31일’로 9일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현장 여건을 반영코자 하였으며, 지난 2007년 이후 10여 년간 개정이 없었던<sup>2)</sup> 동 조례의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정비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다 할 것임

2) 동 조례 최근 일부개정 현황 : 일부개정(2007.3.8.), 시행(2007.3.8.)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단속공무원”을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 가.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이하 “하복 등”이라 한다), 방한복
  - 나. 모자 :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
  - 다. 신발(부츠 포함)
  - 라. 부속물 :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및 견식
2. 제1호에서 규정된 공무원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
  - 가. 모자 :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

나. 흉장

다. 신발(주차단속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단속근무시”를 “단속 근무시”로, “규정에 의한 계절별”을 “계절별”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하복 등은 하계·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계 : 6월 1일 ~ 8월 31일

2. 동계 : 11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3. 춘추계 : 4월 1일 ~ 5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③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을 “시장 또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주 · 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착용수칙) ①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2에 규정한 주차단속직류 지방조무원의 경우</p> <p>가. ~ 다. (생략)</p> <p>라. <u>장구</u> : <u>혁대</u> 및 견식</p> <p>마. <u>부속물</u> : <u>넥타이 · 타이핀</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주 ·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u>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 ·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u>----- ----- -----.</p> <p>제2조(착용수칙) ① <u>주 ·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제복의 종류) ① ----- ----- <u>각 호</u>----- -----.</p> <p>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u>부속물</u> : <u>넥타이, 넥타이 핀, 허리띠</u> --</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및 허리띠

2.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2. ~ 3. (생 략)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하계 : 6월10일~8월31일
- 2. 동계 : 11월1일~다음해 3월31일
- 3. 춘추계 : 4월1일~6월9일, 9월1일~10월31일

③ 서울특별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제4조(착용구분) -----  
----- 각 호-----

1. ----- 단속 근무시 -----  
----- 계절별 -----  
-----.

2. ~ 3. (현행과 같음)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각 호-----.

- 1. ----- 6월 1일~8월31일
- 2. ----- 11월 1일~다음해 -----
- 3. ----- 4월1일~5월 31일-----

③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도 -----  
-----  
-----.

제6조(지급기준) 제복 등의 지급  
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하되, 서울특별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준) -----  
----- 시  
장 또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  
-----.